

무지에의 호소 다시 보기* **

최 훈

【요약문】 송하석 교수는 “무지로부터의 논증, 모두 오류인가?”에서 무지에 호소하는 논증이라고 해서 모두 오류가 아니며, 사회적 맥락이 오류 논증과 설득력 있는 논증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주장한다. 나는 송 교수의 주장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그 ‘맥락’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증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무지에의 호소 논증의 오류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입증의 책임을 결정하는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먼저 주장한 쪽이 입증의 책임을 진다, 무언가 이상한 것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의 책임을 진다, 강자 쪽에 입증의 책임이 있다, 위험하다는 주장을 제기 받은 쪽이 입증의 책임을 진다가 그것이다.

【주제어】 무지에의 호소 논증, 오류, 입증의 책임, 송하석, 지식 전체, 무지 전체

* 접수일: 2011. 1. 12. 심사 및 수정완료일: 2011. 5. 24. 게재확정일: 2011. 5. 26.

** 본 연구는 2011년도 학사경비보조금 재원으로 강원대학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에 대해 유용한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1. 머리말

어떤 주장이 참 또는 거짓임을 모른다는 전제로부터 그 주장이 참 또는 거짓을 추론하는 논증을 무지에의 호소(argument from ignorance, *argumentum ad ignorantiam*)라고 부른다. 많은 논리학 교과서는 이 논증을 오류로 판정하고 있다. 그런데 무지에의 호소 논증을 모두 오류로 취급하다 보면 서로 모순되는 논증을 모두 거부하는 일이 생긴다. 가령 김광수 교수는 『논리와 비판적 사고』에서 무지에의 호소의 보기로서 다음을 들고 있다.¹⁾

보기 1. 아무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일이 없다. 따라서 신은 존재한다.

그는 이 논증이 가능하다면 그것과 결론이 서로 모순되는 다음과 같은 주장도 역시 가능하므로 보기 1은 “논리적 형식으로 달성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보기 2. 아무도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 일이 없다. 따라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김광수 교수는 보기 2가 오류인지는 분명히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병학 교수는 『토론과 설득을 위한 우리들의 논리』에서 보기 1과 보기 2 모두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²⁾ 한편 탁석산 박사는 『오류를 알면 논리가 보인다』에서 ‘무지 논증의 오류’라는 이름으로 다음 논증이 오류라고 소개한다.³⁾

1) 김광수 (1995), pp. 414-415.

2) 하병학 (2001), p. 230.

3) 탁석산 (2001), pp. 128-130.

보기 3.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외계인은 존재한다.

그러고서 『논리와 비관적 사고』처럼 같은 형식인 다음과 같은 논증도 가능하기 때문에 위 논증이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기 4.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외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보기 4 역시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송하석 교수(이하 송 교수)는 최근 발표한 “무지로부터의 논증, 모두 오류인가?”라는 논문에서 위와 같이 결론이 서로 모순되는 두 논증 중 하나에 잘못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무지에의 호소 논증을 분석한다. 그는 다음과 같은 두 논증을 예로 든다.⁴⁾

보기 5. GMO 식품이 인체에 해롭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GMO 식품은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추정해야 한다.

보기 6. GMO 식품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GMO 식품은 인체에 해롭다고 추정해야 한다.

그는 “(두 논증의) 결론은 서로 모순적이므로 우리는 두 논증 중 적어도 하나는 거부해야 한다.”라고 말한다.⁵⁾ 그래서 그 중 어느 논증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를 묻고, 결론적으로 보기 6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곧 보기 6은 무지에 호소하고 있지만 오류

4) 송하석 (2010), pp. 62-63.

5) 송하석 (2010), p. 63.

가 아니다.

송 교수는 무지에 호소하는 논증이라고 해서 모두 오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내가 “무지에의 호소는 오류인가?”에서 주장한 바와 일치한다. 나는 거기서 무지에의 호소가 오류인 경우는 제한된 조건을 만족하는 특수한 경우에 한하는데, 나는 “무지에의 호소가 오류인지 아닌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무지가 철저한 조사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가, 그리고 입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따져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말했다.⁶⁾ 무지에의 호소 논증의 오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입증의 책임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서 입증의 책임이 있는 쪽은 무지에 호소하는 논증을 사용하면 그 논증은 오류이나, 입증의 책임이 없는 쪽은 무지에 호소하는 논증을 사용해도 오류가 아니라는 것이다.

송 교수의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미루어 볼 때 그가 이런 접근법에 동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논증 중에서 어떤 것은 설득력 있고 어떤 것은 오류인가? 이에 대한 분명한 기준 중 하나는 X와 $\sim X$, 어느 한 쪽에 강한 추정(strong presumption)이 부여될 수 있는가이다. 만약 X와 $\sim X$ 중 어느 한 쪽에 강한 추정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 강한 추정이 부여되는 쪽은 부정적 증거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반대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부담을 지니게 된다.⁷⁾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X에 대해서 강한 추정이 주어지는 경우 $\sim X$ 라는 것이 참이라고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X라고 결론 내리는 것, 즉 X가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지기 전

6) 최훈 (2002), pp. 150-151.

7) 송하석 (2010), p. 72.

까지는 우리는 X가 참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증명 부담을 갖는 것이다.”⁸⁾ 강한 추정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은 입증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송 교수도 무지에의 호소 논증이 설득력이 있는지 아니면 오류인지 판정하기 위해서는 강한 추정을 할 수 있는지, 곧 입증의 부담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입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정하는 일이다. 그러나 입증의 책임이 필자의 이전 논문에서처럼 누구에게 있는지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라고만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 마나 한 이야기이다. 누구에게 입증의 책임이 있는지 어떻게 결정할지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아쉽게도 송 교수 역시 이에 대한 답을 ‘상황과 맥락’으로 돌린다. 그는 어떤 무지에의 호소 논증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그 논증에 숨어 있는 조건적 전제를 수용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하는데, 그 조건적 수용가능성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원칙이나 관습과 같은 사회적 맥락에 의존하기도 하고, 특별히 무지로부터의 논증이 대화의 상황에서 등장할 경우, 그 대화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 달라질 수도 있다.”⁹⁾라고 말한다. 송 교수에게도 그 ‘맥락’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다.

나는 이 논문에서 그 ‘맥락’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입증의 책임을 결정하는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겠다. 그 논의는 송 교수의 주장을 정교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그가 제시한 무지에의 호소 논증들의 오류 여부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일치할 것이다. 다만 그 평가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뿐이다. 간혹 다르게 평가를 내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

8) 송하석 (2010), p. 73.

9) 송하석 (2010), p. 76.

다. 우선 2절에서는 무지에의 호소 논증의 외연을 분명하게 한다. 그래서 송 교수와 달리 지식 전제를 담고 있는 논증은 무지에의 호소 논증에서 제외한다.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입증의 책임을 결정하는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몇 가지 무지에의 호소 논증의 설득력을 평가하겠다. 어떤 논증이 오류인지 아닌지 평가하는 작업은, 오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오류의 정의를 따로 제시하지 않고, 무지에의 호소 논증에만 한정해서 그 논증이 오류가 되는 조건들을 제시하는 방법을 이용하겠다.¹⁰⁾

2. 무지에의 호소 논증의 형식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지에의 호소 논증의 형식을 명확하게 하여 이 논증 집합의 외연을 분명하게 하는 일이다. 위에서 이 논증은 어떤 주장이 참 또는 거짓임을 모른다는 전제에 근거한다고 말했다. 모름, 곧 무지에 호소하기 때문에 무지에의 호소 논증이다. 이 전제를 무지 전제라고 불러 보자. 이 전제의 의미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코피와 코헨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 출발해 보자.

물론 어떠한 경우에는 갖가지 방식으로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이후에도 확실한 증거나 결과를 얻을 수 없었던 사실들이 실제적인 논증적 힘을 지닐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흔히 안정성을 검증하고 있는 새로운 약품은 오랜 기간 동안 시험 대상자인 쥐나 혹은 다른 동물에게 주입된다. 그 동물들에게 유독성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인간에게도 그 약이 유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비록 결정적인 증거는 아닐지라도)로 채택된다.¹¹⁾

10) 오류의 정의에 대해서는 최훈 (2008)을 보라.

11) 코피·코헨 (2000), p. 163.

어떤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사실을 그냥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의 철저한 노력 끝에 얻어진 지식일 수 있다. 같은 부정적인 증거라고 해도 그런 과정을 통해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 것과 처음부터 모른다고 하는 것은 구분해야 하지 않겠는가? 곧 ‘갖가지 방식으로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이후에도 확실한 증거나 결과를 얻을 수 없었던 사실들’은 무지 전제가 아니라 지식 전제라고 보아야 한다. 무엇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많이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코피와 코헨은 부정적인 증거의 지식 전제를 이용하는 논증은 얼핏 보기에 무지에의 호소 논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는 무지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확신, 즉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결과가 나타났다면 그것은 필시 몇 가지 검증을 거쳐 나타난 결과일 것이라는 확신과 지식이다.¹²⁾

동물들에게 유독성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인간에게도 그 약이 유독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증은, 무지에 호소하지 않고 철저한 조사를 거친 ‘지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무지에 호소하는 논증의 사례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코피와 코헨의 위와 같은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지에 호소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식 전제에 의존하는 논증은 손쉽게 무지에의 호소 형식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난 도일의 『은성호 사건』(Silver Blaze)에서는 개가 한밤중에 짖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단서가 된다. 개가 짖지 않았다는 것은 숨어 들어온 사람이 개가 잘 아는 인물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개가 짖지 않았다’라는 것은 개가 짖었다는 증거의 부재이다. 그러나 이것

12) 코피·코헨 (2000), p. 164. 비슷한 입장으로 Wreen (1996)을 보라.

은 ‘개가 가만히 있었다’라는 증거의 존재로 해석할 수 있고, 실제로 소설에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한다. 이렇게 지식 전제에 의존하는 무지에의 호소 논증은 사실 무지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지에의 호소 논증에서 제외해야 한다.

나는 “무지에의 호소는 오류인가?”에서는 무지 전제를 이용하는 지식 전제를 이용하는 모두 무지에의 호소 논증의 사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철저한 조사 끝에 알지 못한다는 것이 ‘지식’이라면 단순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도 비록 지식의 양에서 차이가 나겠지만 그 종류에서는 같은 지식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P라는[가 아니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부정적인 지식이다. 따라서 [지식 전제에 의존하는 무지에의 호소 논증]도 무지에의 호소 논증의 한 가지로 보는 데 문제가 없다. 다만 오류가 아닐 뿐이다.¹³⁾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부정적인 지식이라는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의 내용에 주목해야 할 것 같다. 똑같이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는 단지 그것만 아는 데 비해 다른 하나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앎을 통해서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런 논증은 “P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무지 전제를 “P가 아님이 알려졌다.”라는 지식 전제로 손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형태도 무지에의 호소 논증이 아니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지식 전제를 사용하는 논증은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는 오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철저한 입증 과정 끝에 나온 증거에 의해 결론을 내리는 논증은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는 될 수가 없다.

물론, 코피와 코헨도 위 인용문에서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고

¹³⁾ 최훈 (2002), pp. 136-137. 원문 강조.

말했듯이, 그런 논증은 아무리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연역 논증이 아닌 이상 결론이 거짓으로 드러날 수는 있다.¹⁴⁾ 동물에게 유독성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인간에게는 유독한 사례를 우리는 탈리노마이드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50년대 후반 독일 제약 회사가 입덧 방지용으로 개발한 탈리노마이드는 동물에게서는 아무런 유독 증상을 보이지 않았지만, 인간에게서만 부작용을 낳아 유럽에서 수많은 기형아를 태어나게 했다. 그러므로 동물들에게 유독성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인간에게도 그 약이 유독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증은 잘못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유비 논증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무지에의 호소 오류는 아니다. 지식 전제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식 전제를 이용하는 무지에의 호소 논증은 실제로 개별 과학에서 부정적 증거(negative evidence), 컴퓨터 공학에서 ‘결여된 지식으로부터의 추론’(lack-of-knowledge inference), 역사학에서 ‘증거 부재로부터의 논증’(ex silentio argument)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하게 이용되고 있다.¹⁵⁾ 송 교수도 이것을 인정하면서도 지식 전제에 의존하든 무지 전제에 의존하든 외형상 무지에 호소하고 있으면 모두 무지에의 호소 논증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런 주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두 보기를 든다.¹⁶⁾

보기 7. 국무부의 직원 중, 공산주의자라고 생각되는 81명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40명은 공산주의자가 아님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공산주의자일 것이다.

14) 그래서 Walton (1999a)는 오류가 아닌 무지에의 호소 논증을 ‘무효화 가능 추리’(defeasible reasoning)라고 부른다.

15) Walton (1999b)를 보라.

16) 송하석 (2010), p. 66.

보기 8. FBI의 조사 결과 X씨가 간첩이라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X씨는 간첩이 아니다.

보기 7은 무지 전제, 보기 8은 지식 전제에 호소하고 있다. 송 교수는 각 논증을 다음과 같이 숨은 전제를 보충하여 재구성한다.

보기 9. 1. (전제) FBI가 국무부의 직원 중 공산주의자라고 생각되는 81명을 조사했지만, 그 중 40명은 공산주의자가 아님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2. (숨은 전제) 그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면, FBI의 조사는 그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님을 입증할 증거를 찾았을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그들은 공산주의자일 것이다.

보기 10. 1. (전제) FBI의 조사 결과 X씨가 간첩이라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2. (숨은 전제) X씨가 간첩이라면, FBI의 조사는 X씨가 간첩이라는 증거를 찾아냈을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X씨는 간첩이 아니다.

내가 보기 8이 무지에의 호소 논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까닭은 보기 10에서처럼 숨은 전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숨은 전제는 지식 전제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송 교수에 따르면 ‘순수한’ 무지에의 호소 논증인 보기 7도 보기 10과 비슷하게 보기 9처럼 재구성된다. 보기 7과 보기 8의 차이는 “[보기 7]에서는 FBI의 조사가 있었다는 것이고, [보기 8]에서는 조사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뿐인데, 그렇다면 보기 9에 보기 10과 같은 숨은 전제를 보충하면 설득력 있는 논증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기 9는 보기 10과 달리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그는 “결국 무지로부터의 논증 형식을 취하는 모든 논증에 원칙적으로 지식 전제를 보충하는 것이 가능하고, 지식 전제를 숨은 전제로 갖는다는 사실 자체는 그 논증을 설득력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무지로부터의 논증의 일반적 형식을 취하는 논증 중에서 어떤 것은 지식 전체가 암묵적으로 가정되어 설득력 있는 논증이고, 다른 어떤 것은 순수하게 무지 전제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류 논증”¹⁷⁾이라는 설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송 교수의 주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기 7이 보기 9처럼 재구성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그런 재구성이 가능하고 보기 9와 보기 10은 사소한 차이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기 9는 보기 7을 보기 8과 비슷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왜곡한 것이다. 보기 7의 핵심은 40명이 공산주의자가 아님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FBI는 아예 그런 증거를 찾을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바로 무지에의 호소 오류를 소개하기 위해 자주 예로 드는 매카시 사례가 주는 교훈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기 7에 보기 9의 숨은 전제를 보충할 수 있는가?¹⁸⁾ 매카시 사례는 FBI는 그들이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 입증할 증거를 전혀 찾지 않았다는 데 핵심이 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무지에의 호소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사례로 즐겨 인용된다. 그 숨은 전제도 거짓일 뿐만 아니라, 보기 9의 전제도 본디 논증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 FBI는 국무부 직원들을 조사한 적이 ‘없다’. 보기 7은 무지 전제에 의존하고 있다

17) 송하석 (2010), p. 70.

18) 송하석 (2010)은 p. 70의 주석 6에서 자신의 견해에 반대하는 사람은 보기 9에 “보충된 숨은 전제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할지 모른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논의는 찾을 수 없다.

는 점이 보기 8과의 중요한 차이점인데, 보기 7을 보기 9로 재구성하면서 무지 전제가 지식 전제로 탈바꿈했다. 실제로 보기 9는, 송 교수의 주장과 달리 지식 전제 때문에 설득력이 생긴다. 따라서 보기 9와 보기 10 사이의 차이점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지식 전제를 이용하든 무지 전제를 이용하든 모두 무지에의 호소 논증이 라는 송 교수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송 교수의 주장과 달리 보기 9나 10과 같은 숨은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상당히 많다. 그 숨은 전제는 “P라면 P라는 것이 알려졌을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인식적 닫힘’(epistemic closure) 원리라고 알려져 있다.¹⁹⁾ 내 지식이 분명하게 닫혀져 있다면 P가 내 지식 안에 없는 경우에는 P가 거짓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원리에 따르면 가령 만약 비가 내린다면 내가 그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내가 비가 내린다는 것을 모른다면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인식적 닫힘 원리는 꽤 강한 조건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참인 모든 명제가 내 지식 안에 들어와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 많다. 보기 3과 보기 4를 보자. 두 사례에서 인식적 닫힘이 성립하는지 보기 위해 인식적 닫힘 원리를 적용한 숨은 전제를 만들어 보자.

보기 3의 숨은 전제: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려져 있을 것이다.

보기 4의 숨은 전제: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려져 있을 것이다.

¹⁹⁾ Walton (1992)를 보라. Curtis (Webpage)는 이 원리를 ‘닫힌 세계 가정’이라고 부른다. 최훈 (2002), p. 138에서도 이 원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보기 4의 숨은 전제는 성립한다.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그 존재한다는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든 알려져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기 3의 숨은 전제도 성립하는가?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실이 알려져야 하는가? 꼭 그렇지 않다. 외계인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는 과학자가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는지를 알고 하겠는가? 외계인의 존재 여부에 관심이 없는 과학자들은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기 전에는 외계인이 존재하는지도, 외계인이 존재하는지도 알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 3의 숨은 전제는 옳지 않다. 보기 1에 숨은 전제가 있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결국 지식 전제에 호소하고 있는 논증은 겉보기에는 무지에의 호소 논증처럼 보이지만 무지에의 호소 논증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무지에의 호소 논증은 순수하게 무지 전제에 호소하고 있는 논증만을 가리켜야 한다. 그렇다면 앞의 보기들 중 보기 8은 지식 전제에 호소하므로 무지에의 호소 논증이 아니다. 보기 5는 주어진 논증만 가지고는 지식 전제에 의존하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코피가 말한 유독성 검사 사례와 비슷한 보기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역시 지식 전제에 호소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무지에의 호소 논증이 아니다. 그리고 보기 1부터 보기 4까지는 무지 전제에 호소하므로 확실히 무지에의 호소 논증이다.

3. 입증의 책임 판정의 기준

이제 무지에의 호소 논증은 순수한 무지 전제에 의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보기 1과 보기 2, 보기 3과 보기 4는 모두 그런 의미에서 무지에의 호소 논증이다. 그런데 무지에 호소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오류인가? 서로 모순되는 결론을 주장하는 두 논증들을

모두 버려야 하는가? 보기 3과 4를 놓고 봤을 때, 현대 과학의 상식으로는 외계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 외계인이 있음을 보여줄 입증의 책임(burden of proof)이 있다. 입증의 책임이 있는 쪽은 외계인이 있음을 적극적인 증거 – 외계인의 흔적, 외계인의 사진 등 – 를 제시해서 보여주어야지,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다는 무지 전제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 위에서 말했듯이 보기 3의 숨은 전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숨은 전제를 이용한 다음과 같은 논증을 제시할 수 없다.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려져 있을 것이다.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외계인은 존재한다.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외계인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외계인의 존재 여부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계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쪽은 입증의 책임이 없다. 외계인이 없다는 것은 우리 시대 과학의 상식이므로 외계인이 있다는 주장이 잘못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애쓸 필요가 없다. 반면에 보기 4의 숨은 전제는 성립하므로, 그 사람들은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존해도 괜찮다. 곧 그 숨은 전제를 이용한 다음과 같은 논증을 사용해도 괜찮다.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려져 있을 것이다.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외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리하자면 입증의 책임이 있는 쪽은 무지에의 호소 논증을 이

용하면 오류를 저지르지만, 입증의 책임이 없는 쪽은 무지에의 호소 논증을 이용해도 괜찮다. 무지에의 호소 논증은 올바른 논증이다. 다만 입증의 책임이 있는 쪽이 그 논증을 사용하면 오류를 저지르게 된다.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입증의 책임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나는 지금부터 입증의 책임을 결정하는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겠다. 이 기준으로 무지에의 호소 논증의 오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²⁰⁾

(1) 먼저 주장한 쪽이 입증의 책임을 진다

첫째, 먼저 주장한 쪽이 입증의 책임을 진다. 새로운 주장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주장을 한다면 입증의 책임을 다한 것이다. 그러면 대화의 상황에서는 입증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넘어가게 된다. 보기 7의 매카시 사례에서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는 매카시 쪽에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신이나 외계인도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쪽이 입증의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사람이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공산주의자거나 유죄라고 주장하는 쪽이나 신이나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쪽은 무지에 호소해서 논증하면 오류를 저지르게 된다. 거꾸로 공산주의자거나 유죄라고 의심받는 쪽, 신이나 외계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쪽은 입증의 책임이 없다. 그러므로 그 쪽에서 사용하는 무지에 호소하는 논증은 올바른 논증 방법이다. 그래서 보기 1과 3은 오류이지만, 보기 2와 4는 오류가 아니다.

코피와 코헨은 법정에서의 무지에의 호소와 관련해서 “이러한

²⁰⁾ 입증의 책임의 네 가지 기준은 본디 최훈 (2010), 2장에서 제시되었던 것이다.

무지에의 호소는 상대방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무죄로 가정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성공할 수 있지만, 다른 문맥에서 보면 이러한 호소는 분명히 무지에 의거한 오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²¹⁾ 무지에의 호소 논증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쓰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오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째는 왜 그 경우에는 예외가 되는지 설명을 안 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경우에만 유일한 예외라고 오해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마치 법정 상황에서만 무지에의 호소 논증이 정당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피고인이 됐든 누가 됐든 의심 받고 있는 쪽은 입증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무지에 호소하는 논증을 해도 된다고 설명해야 한다. 그러면 입증의 책임이 없이 무지에 호소하는 다른 논증들도 역시 정당한 논증 방법이라고 인정받게 된다. 예를 들어 다음 두 논증을 보자.

보기 11: 피고인에게 죄가 없음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유죄이다.

보기 12: 피고인에게 죄가 있음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무죄이다.

보기 11는 검찰, 보기 12는 피고인 또는 그의 변호인의 논증이다. 둘 다 무지에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증의 책임이 없으므로 보기 12는 오류가 아니나, 검찰은 입증의 책임이 있으므로 보기 11은 오류이다. 이 기준은 형사 재판뿐만 아니라 민사 재판에도 똑 같이 적용된다. 먼저 소송을 제기한 원고 쪽에 입증의 책임이 있으므로 그는 무지에 호소하면 오류를 저지른다. 그런데

21) 코피 · 코헨 (2000), p. 164.

보기 12는 다른 의미에서 무지에의 호소 오류가 아니기도 하다. 법정에서의 ‘무죄’는 ‘죄가 없다’, ‘깨끗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혐의가 없다’라는 뜻이다. 곧 피고인이 기소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뜻이다.²²⁾ 그러므로 보기 11은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쓸 수 있다.

보기 13: 피고인에게 죄가 있음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죄가 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

이 논증은 동어반복이다. 타당한 논증이기도 하다. 너무 당연한 말을 하고 있으므로 어떤 오류도 저지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거나, 굳이 찾자면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이지 무지에의 호소 오류를 범하지는 않고 있다.

이런 기본 원칙은 법정 상황을 떠나서 무엇인가를 의심받고 있는 쪽과 그것을 밝혀야 하는 쪽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무엇인가를 의심하고 있는 쪽은 입증의 책임이 있으므로 무지에 호소하는 논증을 이용하면 오류가 되지만, 의심 받고 있는 쪽은 입증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무지에 호소하는 논증을 해도 오류라고 볼 수는 없다. 송 교수는 야구 경기 도중 투수 A가 상대팀 타자 B를 맞춰 B가 부상당한 후, 기자가 A와 인터뷰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제시한다.²³⁾

기자: B는 당신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맞추었다고 비난하는데, 당신은 정말 B를 맞추는 의도를 가지고 투구했는가?

²²⁾ Massey (1981), p. 491는 교과서의 오류 서술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Copi의 교과서에 대해 이와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최훈 (2002), pp. 141-142를 보라. 최훈 (2010), pp. 95-96에서는 애매어의 오류의 예로 ‘무죄’ 개념의 애매성을 설명하고 있다.

²³⁾ 송하석 (2010), pp. 76-77.

A: 오늘 경기를 이겨서 다행이고, 승리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

이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논증이 제시되었다.

보기 14: A는 자신이 B를 의도적으로 맞추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A는 B를 의도적으로 맞추었다.

송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A가 B를 의도적으로 맞추었다고 추론함직하고, 따라서 이 상황에서 [보기 14]는 받아들일 만한 주장이다.”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보기 14는 오류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평가에 동의하기 힘들다. 보기 14는 A가 의도적으로 맞추었다고 의심하는 쪽에서 제시하는 논증이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이 의심하는 근거를 내놓을 입증의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기 14에서처럼 무지에 호소하는 것은 올바른 논증 방법이 아니다. A는 위 상황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해 대답해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그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의심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이유는 없다. 물론 기자가 어떤 근거 — 제구력이 좋은 A가 그렇게 어이없이 던질 리가 없다거나 보복성 투구임을 의심할 정황이라든가 — 를 제시하면서 질문을 한다면 입증의 책임은 A에게 넘어가고, 보기 14는 입증의 책임이 면제되므로 오류가 아니다.

(2) 무언가 이상한 것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의 책임을 진다

기준 (1), 곧 먼저 주장하는 쪽이 입증의 책임을 지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다. 다음 대화를 보자.

- A: 외계인은 없어.
 B: 왜 없는데?
 A: 그럼 왜 있는데?

기준 (1)에 따르면 A가 먼저 주장했으므로 외계인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A에게 있을 것 같다.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 주장을 먼저 하지 않았더라도 무언가 이상한 것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 상식과 어긋나는 주장을 하는 쪽이 입증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입증의 책임의 둘째 기준이다. 만약 이 기준을 채택하지 않으면 이 세계에는 귀신, 마녀, 요정, UFO, 텔레파시 등 이상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된다. 상식과 어긋나는 것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입증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이상한 것을 주장하는 쪽은 입증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무지에 호소하면 오류를 저지르게 된다. 반면에 그들과의 대화에서 상식적인 입장에서 서 있는 쪽은 무지에 호소해도 오류가 아니다. 그들에게는 입증의 책임이 없으므로 무지 전제를 이용해도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 기준이 첫 번째 기준보다 우선할까? 위 대화에서 B가 이상한 것을 주장하기는 하지만, A가 먼저 주장을 했으므로 입증의 책임은 A에게 있는 것 아닐까? 엄밀하게 말하면 위 대화에서 A는 어떤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외계인은 없다는 것이 상식이므로 외계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 입증의 책임이 있다.”라고 입증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B가 “왜 없는데?”라고 묻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입증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부당하게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이상한 것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는 쪽이 입증의 책임을 진다고 해서 꼭 사이비 과학 주창자에게 입증

의 책임이 있다는 언급만 하는 것은 아니다. 글자 그대로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는 쪽에 자신의 주장이 상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옳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상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이런 입증 과정을 통해서 바뀌었다. 신의 존재가 상식이었던 서양 중세에서는 신의 부재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의 책임을 질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는 입증의 책임이 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으로 넘어갔다.

다음 보기를 보자.²⁴⁾

보기 15: 나는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을 못 봤다. 그래서 그의 땅으로 지나가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의 땅’이 사유지라면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이 없어도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 상식이다. 보기 15를 말하고 있는 이는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입증의 책임이 있고, 그래서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혹시 ‘그의 땅’ 대신에 ‘그 땅’처럼 공원, 산, 바닷가 등을 가리키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자. 그곳은 공유지이므로 보기 15는 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때는 무지에 호소해도 오류가 아니다. 위 보기 14를 송교수에게 자비롭게 해석한다면, 그는 그런 상황에서는 투수가 타자를 맞추었다고 추론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만약 그렇다면 보기 14는 오류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상식이라는 데에 동의하기 어렵다.

(3) 강자 쪽에 입증의 책임이 있다

²⁴⁾ Damer (2001), p. 137. 최훈 (2002), p. 149에서도 이 보기를 다루고 있지만, 거기서는 ‘상식’이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도입하지 않고 있다.

입증의 책임을 결정하는 셋째 기준은, 힘을 가지고 있는 강자와 없는 약자 중 강자 쪽에 입증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 기준은 공정성의 원리에서 나왔다. 약자는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밝힐 만한 지식이 부족하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무거운 입증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경마에서 공정하고 박진감 있는 경기를 위해 실력이 좋은 말에게 더 많은 짐을 지게 하는데, 토론에서 약자보다 강자에게 입증의 책임을 지우는 것도 똑같은 공정성의 원리에서 나왔다.

위에서 입증의 책임 결정의 첫째 원리를 설명하며 법정에서 피고인에게는 입증의 부담이 없다고 했다. 피고인에게 죄가 있다고 검찰 쪽에서 먼저 주장했기 때문에 검찰에게 입증의 책임이 있다. 검찰에게 입증의 책임이 있음을 둘째 원리로도 설명할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검찰에게 입증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셋째 원리에 의해서도 설명 가능하다. 검찰과 피고인 중에 검찰이 더 강자이므로 검찰에게 입증의 부담이 있다고 말이다.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피고인은 자신이 죄가 없음을 밝힐 지식과 능력이 없으므로 그쪽에 입증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실제로 이런 공정성 개념이 발달하지 못한 과거에는 약자인 피고인에게 입증의 책임을 지우기도 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혐의를 받는 쪽에 입증의 책임을 뒤집어 씌웠고, 서양에서도 마녀라는 혐의를 뒤집어 쓴 사람이 스스로 마녀가 아님을 밝혀야 했다.

사회의 인권 의식이 발달함에 따라 약자에 대해 배려하는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진다. 그럼에 따라 입증의 책임도 바뀌는 추세이다. 제조사와 소비자 중에서 제조사에 입증의 책임을 지우는 제조물책임법의 도입, 의료 사고를 당한 환자와 의료진의 법정 소송에

서 의료진에게 입증의 책임을 지우는 판례 등이 그런 사례가 될 것이다.²⁵⁾ 제품 성능에 관한 다툼에서 소비자 쪽은, 의료 소송에서 환자 쪽은 무지에 호소해도 정당한 논증 방식이 되는 쪽으로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4) 위험하다는 주장을 제기 받은 쪽이 입증의 책임을 진다

입증의 책임을 결정할 넷째 기준은 위험하다고 주장하면 입증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넘어간다는 것이다. 위 첫째 기준에 따르면 당연히 위험하다는 문제 제기를 한 쪽에 입증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위험이 상당히 크고 분명해 보인다면 비록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입증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넘어가야 한다. 위험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고 위험을 없애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여기 두 가지 종류의 판단 오류가 있다. 하나는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사실은 위험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위험하다고 판단했는데 사실은 위험하지 않은 경우이다.²⁶⁾ 나무 뒤에 맹수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사실은 있는 경우와 나무 뒤에 맹수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사실은 없는 경우가 각각의 사례가 될 것이다. 두 경우 모두 피해야 할 오류이지만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자연 선택, 곧 생존과 번식이라는 관점에서는 후자가 더 나은 선택이다. 비록 쓸모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기는 하지만 치명적인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우

25) 하병학 (2001), pp. 203-204에서도 의료 사고나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이런 사례로 들고 있다. 거기서는 자동차 제조사나 소비자 모두 무지에의 호소 논증을 이용하면 ‘논리적으로 보면’ 오류를 저지르고 있지만, 자동차 회사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입증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 논의에 대해서는 최훈 (2002), pp. 147-148을 보라.

26) 데이비스 (2010), pp. 39-42는 이를 존재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오류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는 오류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杞憂)와 같이 어떠한 위험 제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그 위험 제기가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느냐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 판단할 기준이 될 것이다. 지나친 기우는 생존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송하석 교수는 다음과 같은 두 보기를 비교하고 있다.²⁷⁾

보기 16. 이 총에 탄알이 장전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총에 탄알이 장전되어 있지 않다고 추정할 수 있고, 따라서 사람을 향하여 이 총의 방아쇠를 당겨보아도 된다.

보기 17. 이 총에 탄알이 장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총에 탄알이 장전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따라서 사람을 향하여 이 총의 방아쇠를 당겨서는 안 된다.

송 교수도 “위험 가능성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원칙이다.”²⁸⁾라고 말함으로써 이 넷째 기준을 받아들이고 있다. 탄알은 아주 위험하다. 따라서 탄알이 장전되어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쪽이 아니라 그 반대쪽에 입증의 책임이 있다. 곧 그 쪽은 보기 16처럼 무지에 호소하는 논증을 하면 오류를 저지르게 된다. 반면에 보기 17은 무지에 호소하고 있지만 올바른 논증 방법이다.

위험 가능성 기준은 다른 위험 가능한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다. 식품의 안전은 우리의 생존과 번식에 직결되므로, 유전자 변형 식

27) 송하석 (2010), p. 79. 비슷한 보기가 Waller (2001), p. 51, Walton (2008), p. 58, 최훈 (2002)에도 있다.

28) 송하석 (2010), p. 80.

품이나 광우병 소고기과 관련된 논쟁에서도 그것들이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왜 위험하지 않는지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험하지 않다고, 무지에 호소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오류를 저지르게 된다. 결국 보기 5와 보기 6 중에서는 보기 5가 오류가 되고, 보기 6은 정당한 논증이 된다. 반면에 생존과 번식에 직접적인 위험 요소가 되기는 힘들다고 생각되는 위험 경고 — 기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 가 있다면 그 입증 책임은 문제를 제기한 쪽에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어떤 논증이 오류인지 아닌지 밝히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전제와 결론이 무엇이고, 숨은 전제는 있는지 등을 살피는 논증 분석을 제대로 하는 일이다. 무지에의 호소 논증에서도 그 과정을 거쳐 지식 전제에 호소하고 있는 논증은 무지에의 호소 논증이 아니라고 제외했다. 그 다음에 진정한 무지에의 호소 논증이라고 하더라도 입증의 책임이 없는 쪽에서 논증을 한다면 오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어느 쪽에 입증의 책임이 있는지 결정할 네 가지 논증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송 교수가 제시한 논증들이나 교과서의 논증들이 무지에의 호소 오류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한 쪽이 입증의 책임을 진다는 둘째 기준은 먼저 주장한 쪽이 입증의 책임을 진다는 첫째 기준보다 우선한다고 말했다. 강자 쪽에 입증의 책임이 있다는 셋째 기준은 둘째 기준의 구체적인 사례라고 볼 수도 있겠다. 약자보다 강자 쪽에 책임을 지우는 공정성의 원리는 현대의 새로운 상식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쪽이 입증의 책임을 진다는 넷째 기준도 마찬가지이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위험을 경계하는 것은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지혜이다. 따라서 첫째 기준과 달리, 셋째 기준과 넷째 기준은 둘째 기준과 충돌할 염려는 없다. 셋째 기준과 넷째 기준은 둘째 기준과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셋째, 넷째 기준이 둘째 기준의 하위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별도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까닭은 그런 기준이 요구되는 상황이 논증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또 다른 상식이 중요하게 부각된다면 별도의 기준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광수 (1995), 『논리와 비판적 사고』, 철학과현실사.
- 데이비스, 행크 (2010), 『양복을 입은 원시인』, 김소희 옮김, 지와 사랑.
- 송하석 (2010), “무지로부터의 논증, 모두 오류인가?”, 『논리연구』 13, (2), pp. 61-82.
- 최훈 (2002), “무지에의 호소는 오류인가?”, 『논리연구』 5, (2), pp. 133-151.
- 최훈 (2008), “오류의 새로운 정의”, 『범한철학』 51, pp. 359-378.
- 최훈 (2010), 『변호사 논증법』,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 코피, 어빙·칼 코헨 (2000), 『논리학입문』 제10판, 박만준 외 옮김, 경문사.
- 탁석산 (2001), 『오류를 보면 논리가 보인다』, 서울: 책세상.
- 하병학 (2001), 『토론과 설득을 위한 우리들의 논리』, 서울: 철학과 현실사.
- Curtis, Gary N. (Webpage), “Appeal to Ignorance”, <http://www.fallacyfiles.org/ignorant.html>.
- Damer, T. Edward (2001), *Attacking Faulty Reasoning*, 4th ed., Wadsworth.
- Massey, Gerald J. (1981), “The Fallacy behind Fallacies”,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Vol. VI: The Foundations of Analytic Philosophy* 6, pp. 489-500.
- Waller, Bruce N (2001), *Critical Thinking: Consider the Verdict*, Fourth Ed., New Prentice Hall.
- Walton, D. (1992), “Nonfallacious Arguments from Ignorance”,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29, pp. 381-387.

- Walton, D. (1999a), “Profiles of Dialogue for Evaluating Arguments from Ignorance”, *Argumentation* 13, pp. 53-71.
- Walton, D. (1999b), “The Appeal to Ignorance, or *Argumentum Ad Ignorantiam*”, *Argumentation* 13, pp. 367-377.
- Walton, D. (2008), *Informal Logic: A Handbook for Critical Argumentation*, Second Edi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reen, Michael J. (1996), “Most Assur'd of What He Is Most Ignorant”, *Erkenntnis* 44, pp. 341-68.

강원대학교 부교수

School of General Studi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oih@kangwon.ac.kr

Ad Ignorantiam Revisited

Hoon Choi

Professor Hasuk Song argues that every *argumentum ad ignorantiam*, i.e. the argument from ignorance is not fallacious, and social contexts play a crucial role to judge whether the argument is fallacious or not. I generally agree with him, but I think we cannot have help from his position without knowing what those contexts are. 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 concept of burden of proof is the crucial one to judge whether *ad ignorantiam* is plausible or not, and then present four criterions who have the burden of proof. There is a burden of proof on one who argues first, who insists the doubtful ones, who has powers, and who thinks that a situation is not dangerous.

Key Words: *Argumentum ad ignorantiam*, Fallacy, Burden of proof, Hasuk Song, Knowledge assumption, Ignorance assumption